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113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가 시장 임기와 연계되지 않아 시장 교체 시 인사 갈등이나 행정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거나 연계하도록 규정하여 책임 있는 시정 운영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인사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zian112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책임있는 시정 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출자·출연 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임명권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전속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련 법령 등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임기) ①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시장 당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수위원회를 통해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후임 기관장이 임명될 때까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따른다.